

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」

업무 협약서

“태백시보건소”와 “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”는 태백시 지역 내 거동불편 노인의 재가생활 지원과 「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의 기본원칙)

본 협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 모든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각 기관은 협력 과정에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.

제3조 (협력사항)

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태백시보건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총괄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진다.
2. 사업 참여센터는 사업 참여 및 서비스 제공 협력, 운영 기준 및 지침 준수, 이용자 편의 제공 등에 협조한다.
3. 보건소는 대상자의 건강 관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참여센터에 제공하고, 협력하여 방문간호 계획을 조정 및 보완한다.
4. 방문간호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상태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 참여센터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한다.
5.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협력한다.
6.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 (준수사항)

1. 참여센터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 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 날인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 (기타사항)

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 합의에 따른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5월 14일

태백시보건소장

다같이효종합복지센터

소장 안 상 현

센터장 전 정 예

안상현

전정예